

財務會計의 理論構造에 대한 考察

沈 載 錫

<차 례>

- I. 序論
- II. 財務會計의 目的과 會計原則
- III. 財務會計의 理論構造
- IV. 結論 및 要約

I. 序 論

現在 展開되고 있는 會計理論은 全般的으로 보아 用語의 不統一은 勿論 體系的인 面에서 基礎的 理論構造가 잘 되어있지 않으므로 繼續 困難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美國에서는 一般的으로 認定받을 만한 財務會計의 理論的 構造를 계속 研究中에 있다. 代表的인 例로 1966年 7월에 美國會計學會(A. A. A.)의 基礎會計理論制定委員會(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는 “基礎會計理論”(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¹⁾을 發刊하였고 1970년 10월에는 美國公認會計士協會(A. I. C. P. A.)의 會計原則審證會(A. P. B)는 *Statement No. 4*, “企業財務諸表의 基本的 概念과 本質的 原則”(Basic Concept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²⁾을 發刊하였다.

筆者：中央大學校 經營大學 助教授

1)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2) A. I. C. P. A.,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No. 4*, New York, Accounting Research Division A. I. C. P. A., 1971.

특히 *Statement No. 4*는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財務會計의 目的, 原則, 節次 및 實務의 本質에 관한 것을 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勞力이 널리 認定받지 못했고 會計實務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努力의 結果로 얻어진 것은 理論家들에게 方法論의 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을 환기하여 주었다.

다른 學問分野에서는 理論形式에 있어서 方法論이 크게 重要視되고 있으나 會計學에는 會計 그 自體를 形成化(formalization) 할 수 없는 技術(art)라고 오랜동안 믿어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態度는 점차로 挑戰을 받고 있다.

아지리(Ijiri)는 形式的 接近法(formal approach)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傳統的 會計”는 서로 다른 原則이나 實務의 集合體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相異한 것들을 體系的으로 整理할 수 있는 理論이 없었다.

그래서 複雜한 現象을 說明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순하고도 명료한 概念이나 理論을 考案함으로써 傳統的 會計를 어느 程度 만족스러운 水準에 까지 올릴려고 試圖해 왔다.”³⁾

形式化(理論化)하기 위해서는 方法論을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會計理論의 基礎는 어떤 理論이나 思想을 表現할 수 있는 理論的 構造로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서로 관계없는 概念, 理想, 規則이나 標準은 理論의 本體에서 認定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理論的, 繼續的, 體系的이고 基礎的인 構造가 있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美國財務會計의 理論的 構造를 考察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一次的인 目的은 會計의 全般的인 理論構造의 運轉을 把握해보이려는데 있다. 複雜하고 多樣한 會計現象을 體系的으로 理解할 수 있다면 會計學徒는 勿論 實務者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II. 財務會計의 目的과 會計原則

財務會計의 目的 또는 財務諸表의 目的과 관련되는 研究를 해온지는 이미 오래다.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會計의 基本的 公準”(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⁴⁾과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企業會計原則의 試案”(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⁵⁾에서 이미 接近한 일이 있

3) Yuji Ijiri, *The Foundations of Accounting Measurement: A Mathematical, Economic, and Behavioral Inquiry*, Prentice-Hall, Inc., 1967, p. 88.

4)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1. p. 4.

5) Robert T. Sprouse and Maurice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American

었다. 1966년에는 美國會計學會에서는 “基礎的 會計理論”에서 4개의 會計目的과 4개의 標準(Standards)을 提示하였다. 簡單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A. A. A.의 會計目的⁶⁾~① 制限된 資源을 使用하는 意思決定에 관한 것, 即 重要的 意思決定의 分野를 確認하고 目標 및 目的을 決定하기 위하여,

② 어떤 實體의 人爲的 物的 資源을 效果的으로 指揮 統制하기 위하여,

③ 資源의 管理任務와 報告를 위하여,

④ 其他 廣義의 다른 社會的 機能을 조장하기 위하여 즉 稅金이나 商業의 獎勵 혹은 統計資料를 마련하여 關心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 A. A.의 4개의 標準⁷⁾~① 關聯性(relevance) ②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③ 不偏性(freedom from bias), ④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

會計의 目的은 위에 4가지 目的은 達成하기 위하여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會計實務를 判定할 수 있는 基礎的 概念을 設定하는데 있다. 어떤 會計理論을 發展시키는 目的은 會計處理方法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判定하기 위한 標準을 設定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와같은 標準에 맞는 節次는 채택되어야 標準에 適合하지 못하는 節次들은 除去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單純히 그 標準이 없다는 理由로 會計理論을 既存實務의 全體와 同一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多樣한 會計實務의 採擇如否를 위한 理論的 基準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 위에 열거한 標準은 現在와 未來의 實務를 위한 標準으로서 會計實務의 立場에서 보면 커다란 變化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1970년에는 美國公認會計士協會에서 *Statement No. 4*, “企業財務諸表의 基本的 概念과 本質의 原則”의 第4章에서 “財務會計와 財務諸表의 目的”이란 題目으로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財務會計와 財務諸表의 目的은 財務諸表 利用者들 특히 所有者나 債權者들이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計量的인 財務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⁸⁾고 하였으며 이와같은 目的은 다시 財務會計情報의 適切한 內容을 決定하여 주는 一般的인 目的(general objectives)과 有用性있는 財務情報의 性質을 規定하는 質的인 目的(qualitative objectives)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目的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을 改善하고 評價하는 指標가 된다고 하였다.

1973년 10월에 同協會는 財務諸表의 目的을 위하여 任命되었던 研究團으로부터의 研究結果인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⁹⁾이란 책을 發刊하였다.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2.

6) A. A. 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p. 4.

7) Ibid., p. 7.

8) A. I. C. P. A., Statement No. 4, Chapter 4.

9) A. I. C. P. 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ctober 1973.

이 報告書에서 具體적이고 明確한 財務諸表의 目的들을 제시하고 있다. 財務諸表의 基本目的, 經濟的 意思決定을 위해서 有用한 情報을 提供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 이외에도 10여개의 目的들이 明示되어 있다. 拙稿 財務諸表의 目的에 대한 考察¹⁰⁾에서 全體의 內容을 要約하였다. 여기서는 紙面의 制限때문에 생략한다.

A. A. A.의 “基礎會計理論”에 있어서의 方法論은 規範的인 接近法(Normative approach)이란 點에서 A. I. C. P. A.의 實務的인 接近法과는 對立된다고 하였다. 또한 *Statement No. 4*는 現在 認定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目的을 內包한데 비하여 가장 最近에 報告된 “財務諸表의 目的”은 그 方法論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適用可能한 問題나 技術的인 制限性에 구애되지 않고 理想的인 것을 實證하려고 하였다.

*Statement No. 4*의 本文 一部를 引用하면, “이 報告書는 全般的이고 繼續的인 財務會計의 構造와 有用한 財務情報을 啓發하기 위한 하나의 段階이다”¹¹⁾라고 하였으며 또한 同 報告書는 財務會計上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理論的 構造를 마련하려고 試圖했다.

또한 同 報告書의 第五章에서는 “財務會計의 基本的 樣相과 基本的인 要素”(Basic Features and Basic El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財務會計의 基本的 樣相

- 1) 會計主體(accounting entity)
- 2) 繼續企業(going concern)
- 3) 經濟的 資源과 債務의 測定(measurement of economic resources and obligations)
- 4) 期間(time period)
- 5) 貨幣로서의 測定(measurement in terms of money)
- 6) 發生(accrual)
- 7) 交換價値(exchange price)
- 8) 概算(approximation)
- 9) 判斷(judgement)
- 10) 一般目的으로서의 財務情報(general purpose financial information)
- 11) 財務諸表와의 基本的 關聯性(fundamentally related financial statements)
- 12) 形式에 優先하는 實體(substance over form)
- 13) 重要性(materiality)

10) 拙稿, “財務諸表의 目的에 대한 考察”, 『經營學論集』第1卷 第1號, 中央大學校 中央經營研究所, 1974, pp. 68-78.

11) A. I. C. P. A., *Statement No. 4*, 6.

2.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A. 一般會計原則(pervasive principles)

- 1) 測定의 一般原則(pervasive measurement principles)
- 2) 慣習의 修正(modifying conventions)

B. 廣義의 機能的 原則

- 1) 選擇과 測定의 原則
- 2) 資産, 負債, 資本, 收益 및 費用에 影響을 주는것을 決定하는 原則
- 3) 財務諸表의 表示原則
- 4) 其他 諸原則¹²⁾

한마디로 財務會計의 既存 會計資料를 集大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會計의 目的을 크게 3개로 나누어 그 첫째는 投資者나 債權者와 같은 外部利害關係者들에게 企業의 財務事項에 관한 適切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內部經營者들에게 그들의 意思決定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組織社會의 社會·經濟的 機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었다. 위의 3個의 目的中 그 첫째 목적 即 財務會計의 目的이라고 불리우는 外部利害關係者들에게 財務情報를 提供하는 것에 主眼點을 두고 論하였다.

勿論 會計資料는 企業經營의 效果的 運營뿐만 아니라 國家計劃이나 總生産物의 分配問題등에도 利用되고 있다. 예를들면 政府의 租稅計劃樹立, 商工에 관한 法律制定 및 勞動組合에 있어서 賃金調整등에도 會計資料가 쓰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會計資料를 가장 많이 直接的으로 利用하는 것은 역시 企業이라고 하겠다.

會計資料가 投資者, 經濟者, 從業員, 消費者, 債權者 및 政府行政家들에게 그 重要性이 매우 크므로 會計適程이 어떤 理論的 基盤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會計資料에 대한 信賴는 그 資料의 有用性, 客觀性, 妥當性 및 資料의 正確性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利害關係者들에게 財務諸表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와같은 報告書가 會計目的과 一致되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標準이나 會計節次에 따라 作成되었으리라는 明確한 基準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標準이나 節次들은 잘 定義되어야 하며 普遍的으로 利用可能하고 利用者들에게 意思疎通이 되고 會計專門家들에게도 明確히 수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會計專門家들은 會計理論과 더불어 實務의 基礎를 發展시키고 普及해야 할 二重的인 責任을 갖고 있다 하겠다.

12) Ibid., Chapter 5.

Ⅲ. 財務會計의 理論的 構造

會計理論의 基礎는 어떤 理論이나 思想을 表現할 수 있는 構造(structure)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련의 서로 관계없는 概念, 理想, 規則이나 標準은 理論의 本體로서 認定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論理的, 繼續的 또는 體系的, 基本的인 理論構造가 必要하다.

美國會計의 한 專門委員會는 理論을 다음과 같이 決議하고 있다.

“理論은 한 研究分野의 一般的 理論構造를 形成하는 假定, 概念 및 實務를 結合한 일련의 原則이다.”¹³⁾

이와같은 美國會計學會의 상당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現在 解決되고 있는 會計理論은 全般的으로 보아 用語의 不統一 내지는 體系的인 理論構造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繼續 困難을 받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Statement No. 4*도 統合的인 理論構造를 提示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財務會計의 目的, 原則, 節次 및 實務의 本質的인 것을 集大成한 것이라고 하겠다.

本稿에서 提示되는 基礎的 理論構造는 *Glen A. Welsch, Charles T. Zlatkovich, John Arch White*의 *model*이다.¹⁴⁾

여기서 財務會計의 理論構造를 크게 4개의 範疇로 나누어 그 첫째는 重要한 基礎的 假定, 둘째로는 基礎理論概念, 셋째로는 一般會計原則, 넷째로 會計節次로 되어 있으며 위의 4개의 範疇속에는 各各 그것들과 關聯되는 補助概念들을 內包하고 있다.

1. 重要한 基礎的 假定

基礎的 假定들은 會計가 通常的으로 行해지고 있는 全體 環境의 넓으면서도 특수한 樣相들이기도 하다. 그 假定들은 會計의 目的과 直接的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重要하다고 하겠다. 이들 假定은 環境의 모든 樣相을 內包하는 것은 아니고 重要한 理論의 概念과 일반적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을 決定하는데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것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열거한 基礎的 假定 즉 個別主體, 繼續性, 測定單位 및 時間(期間)에 대한 假定들은 會計 自體보다 더 넓은 企業環境의 本質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基礎的 假定의 本質은 會計自體를 떠나서 企業社會가 個別企業을 독특한 별개의 主體로 보고, 所有主와 分離하고 있으며 個別企業의 營業은 일

13) A. A. A., *A Statement of Accounting Theory*, p. 1.

14) Welsch, Zlatkovich, and White, *Intermediate Accounting*, (3rd ed.) Richard D. Irwin, Inc., 1972. pp. 6~24.

반적으로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보통 영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價値 如何를 묻지않고 認定될 수 있는 貨幣의 單位로 商去來를 행하고 經營활동은 一定한 期間에 局限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會計理論, 原則 및 實務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주는 4개의 가정들의 補助概念들은 다음과 같다.

個別主體의 假定(The Separate Entity Assumption) : 會計는 특수한 獨立된 企業單位 즉 主體와 관련이 되며 그 各 企業을 우리는 會計單位라 부른다. 各 會計單位는 所有主와 분리되어 있으며 別個의 法律的 構造와 會計構造를 갖고 있는 다른 企業體와는 구별된다. 즉 會計의 目的을 위한 이들 假定은 企業을 하나의 別個의 主體로 認識하고 所有主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이 個別主體 概念에 의하면 企業은 그 目的達成을 위해 모든 資源을 소유하고 債權者나, 債務者의 權益에 대하여 하나의 主體로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記錄이나 報告書들은 그 특수한 主體의 觀點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와같은 생각이 去來, 集計分析 및 資料分類에 의해 나온 財務報告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企業과 企業主 사이의 去來를 分析할 때 明確한 구별의 基礎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들면 企業財產이 아닌 所有主 개인의 주택은 企業의 報告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이 例에서, 會計主體는 法律的인 意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며, 債權者는 所有主에 對한 請求權을 만족하기 위해 所有主 개인의 주택과 企業資產 둘다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主體理論의 개념은 企業體의 營業成果를 決定한다는 점에서 그 重要性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個人的인 所有主로서의 去來가 會社의 去來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會計에 종사하는 者가 만일 私去來와 企業去來의 일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會計學은 根本的으로 經濟的 모델을 통하여 主體의 經濟的 實體를 說明하고자 한다.

資產=負債+資本

主體의 交換去來는 이 모델에 의해 分析되고 記錄된다고 보고 있다.

繼續性的 假定 : 繼續性的 假定은 흔히 繼續企業의 概念(going-concern concept)이라고도 부른다. 이 概念은 一企業 또는 會計主體의 無限定한 繼續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企業이 清算되지 않고 계속 存續한다고 보는 概念이다

이 假定은 會計士의 職業이 영원히 繼續된다는 假定이 아니고 定款에 規定된 營業이나 契約을 遂行하는데 必要하고 充分한 期間동안 安定성과 繼續성을 前提로 한 것이다. 이와같은 概念이 清算에 基準을 두지 않은 會計學의 理論的 根據를 마련하고 會計處理에 있어서의 評價와 配賦의 理論的 根據를 마련

하고 있다. 예를들면 減價償却 및 기타 償却의 節次는 이 概念에 依存한 것이다. 이 假定은 一般的으로 企業에 資本을 投資者의 意思決定에 대한 基礎가 된다. 따라서 이와같이 投資된 資本이나 그 結果로 생긴 損益은 企業家(entrepreneur)의 收益을 包含한 定款의 目的대로 一括性 있게 營業行爲를 繼續할 것이라는 假定에 基準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어떤 企業體가 큰 損失이 나서 清算段階에 이르렀다면 繼續性的 假定에 基準을 둔 傳統的인 會計는 實情에 맞는 報告書를 作成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清算會計의 경우 모든 評價는 즉각적으로 實現될 수 있는 實際價格으로 計算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會計學者들은 企業이 永遠히 存續하지 않을 것이라는 事實도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繼續性的 假定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企業이 資本損失의 大過없이 計劃대로 企業의 現資源을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에 基準을 둘때만이 本質的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假定의 基礎위에서 만이 會計過程에 投下된 資本, 經營의 能率性 및 繼續企業으로서의 財政狀態를 精確히 記錄하고 報告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假定下의 會計에서는 時價도 清算價値도 특별한 重要性을 가질 수 없으며 다만 資產 負債 및 資本會計에서 原價의 利用을 위한 基準으로서만 쓰인다.

測定單位的 假定 : 交換의 매개체로서의 어떤 單位는 商業水準을 物物交換보다 높은데로 끌어 올리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다. 마찬가지로 會計學에서도 어떤 測定의 單位가 必要한 것이다. 記錄되고 分析되고 報告되어야 할 資產이나 資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共通된 單位를 使用하며 表現할 必要가 있다. 有用性을 極大化하기 위해서 會計學은 企業社會에서 使用하고 있는 것과 같은 測定의 單位인 貨幣를 쓰는 것이 분명히 理想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會計學이 非金錢的인 資料를 취급하는 일이 많으나 貨幣單位が 支配的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貨幣는 會計過程에서 最小公倍數 즉 자(尺)의 역할을 한다. 자와 같다는 점에서 우리는 會計學에서 다른 重大한 問題點을 가지게 된다. 늘 10Cm인 미터 자(尺)와는 달리 貨幣單位는 購買力에 따라서 價値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事實 때문에 會計學은 貨幣單位의 不變이라든가 貨幣價値의 變化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하는 假定을 내세우곤 한다. 미국과 前 같은 나라에서는 1930年初에 심각한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있었지만 2차대전까지는 價格變化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대전 후에 급격한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會計學者들은 貨幣單位에 대한 假定을 再考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價格變動率이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 問題에 대한 것이 하나의 研究課題로서 充分한 意義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會計專門家들은 이 問題에 상당한 關心을 갖고 貨幣의 購買力 變化에 따른 效果에 대하여 여러가

15) Raymond J.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Prentice-Hall, Inc., 1966. Chapter 4,

지 提案을 해오고 있다. 美國에서는 이미 꽤 많은 論文들이 續出되어 오고 있으며 指導的인 專門家들이 계속 이 問題를 研究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測定單位에 대한 假定을 버리는 段階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測定單位의 假定은 會計學發展에 특별히 重大한 役割을 하여 왔다. 原價主義에 대한 指摘은 이 假定과 관련이 되며 *Inflow*와 *Outflow*를 取得原價로 表示하는 會計의 基礎가 된다. 測定單位假定은 어떤 價値의 測定이라는 概念이 없이 說明되어 왔다. 會計學에서 貨幣規約(monetary convention)이라고 불리우는 概念은 投資한 돈과 벌린 돈을 記錄해야 한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마치 營業過程에 投資되거나 再投資되거나 再投資된 것처럼 貨幣資本의 여러 가지 投資를 追求해야 하고 궁극에 가서는 營業活動으로부터 오는 總 貨幣收益을 測定하여 거기에서 貨幣資本을 控除한 나머지가 貨幣所得으로 된다. 그러므로 貸借對照表는 各 源泉으로부터 받은 金額을 效果的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그 金額의 源泉은 債權者·所有主 혹은 社內留保가 될 것이다. 貨幣資本의 源泉과는 달리 貸借對照表의 資產은 資金이 投資된 具體的인 狀態로 表現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流動資產 固定資產 등이 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본 貸借對照表는 받은 돈에 대한 責任을 報告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概念下에서는 會計의 機能은 價値를 評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貨幣의 價値는 時間에 따라 變한다. 그러나 會計는 이와같은 變化에 따라 影響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 目的이 받은 돈에 대한 用度를 자세히 報告하는데 있으므로 購買力의 變動에도 불구하고 精確한 貨幣計算만 하면 된다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概念에서 價格水準變動의 效果를 어떤 補助的인 資料의 分析을 이용해서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期間에는 그 變動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測定單位 假定에 대한 또 다른 見解는 화폐단위의 購買力變化가 별로 重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原價로서의 貨幣는 事實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取得當時에 꼭 같은 購買力을 가졌던 것처럼 測定속에 뒤섞여 있다.

貨幣收益은 原價가 發生한 時期와 原價가 收益에 對照되는 時期와의 사이에 貨幣購買力의 變動을 無視하고 같은 期間에 配分된 費用과 같은 金額인 것처럼 取扱되고 있다.¹⁶⁾

A.P.B.는 報告書 第3(Statement No. 3)을 通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價格水準變動調整表는 必須的인 要求事項은 아니나 原價主義에 입각한 財務諸表와 並行하여 使用한다면 상당히 有用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이미 몇개의 指導的인 企業에서 이와같은 方法을 施行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一般會計原則은 原價主義會計를 계속 고집하고

16) Robert L. Kane, Tr.(ed.), *CPA Handbook*, New York, America Institute of Accountants, 1953, Vol. III, Chap. XVII, p.13; *Changing concepts of business Incom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2) p.20.

있다.¹⁷⁾

時間의 假定(the time-period assumption) : 企業의 經營效果는 그 企業의 最終清算段階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短期的인 中間財務報告가 必要하게 된다. 그 理由는 企業이나 政府가 短期的인 會計處理의 必要性을 強要하고 있기 때문이다. 企業慣習에 의하면 그 期間은 政府의 會計年度와도 마찬가지로 보통 一年으로 한다. 어떤 會社는 그 期分을 一年으로 定하나, 어떤 會社들은 自然的인 會社期間을 채택하고 있다. 즉 年中 企業活動이 가장 낮은 時期를 택하는 수가 많다. 實務的 立場에서는 營業의 區分을 연장하여 보통 月別로 時間을 잡아 企業內部的 目的에 利用하기도 한다. 期間을 이렇게 짧게 잡으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費用과 收益의 配分이 어려워진다.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는 反面에 經營者, 所有主 및 債權者들에게는 짧은 期間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會計期間은 이들의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도록 考案되어야 한다. 會計期間의 가정은 짧은 時間을 基準으로 하여 區分하는 것이 精密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必要性에 따라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 假定은 既成 會計理論의 하나의 基礎가 되며 短期報告書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相互關聯된 막연한 資料를 쓰게 한다. 그러므로 短期財務報告書는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有用性이 적어진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여야 한다. 하나의 期間假定은 損益計算書, 貸借對照表 및 剩餘金計算書에 重大한 影響을 주는 豫想計定 또는 移延計定の 基礎가 된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이 가정은 環境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즉 經濟的 實務나 계속 增加하는 營業에 관한 情報의 要求때문인 것이다.

2. 基礎的 理論概念

基礎的 理論概念은 一企業의 基本的 財務構造와 관련이 되는 넓은 概念들이 다. 이 概念은 自由經濟에서 運營되는 會計主體의 理論的 本質과 關聯이 된다. 그래서 이미 열거한 企業主體論, 資本主體論 및 資本理論의 概念들은 企業環境에서 最近에 認定받고 있는 請求權(equities)의 理論이나 會計가 基本的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方法들과 關聯되는 것은 아니고 會計主體를 定義하는 基本的인 問題나 一般會計原理의 基礎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러나 어떤 意味에서 보면 위에 論述한 根本的 假定들과는 관계없이 獨立的으로 通

17) AICPA,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Statement No. 3, New York, June 1969, A.P.B. (The Accounting Principle Board)

가 發行했던 三冊의 出版物들이,

① Opinion—公認된 것으로 強制力을 가짐.

② Statemnt—바람직한 會計實務나 原則으로 引渡하도록 고안된 것 즉 권고에 한함

③ Research Study—Opinion과 Statement 둘 다를 뒷 받침하는 研究의 結果와 方向을 報告하며 會計의 未來變化를 위한 基礎를 準備하기 위한 論集.

用될 수 있는 理論의 概念들이 있다. 個別企業의 性格은 說明하기 위하여 이미 說明한 3개의 理論的 概念들은 예로서 말할 수 있다.

理論家들은 企業單位의 *equities* 理論解說을 마련하기 위해서 概念중 하나만 選擇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問題는 3개의 理論中 어떤것이 會計主體의 眞實한 理論의 性質을 가장 잘 定義하였으며, 企業體內에 建전한 企業會計原則과 節次를 잘 設定했는가 또 會計의 第一次의 目的을 가장 잘 認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企業主體論과 資本主體論만이 會計主體의 根本的 性質을 잘 說明하는 것으로 認定받고 있는것 같다. 이 두 理論은 會計思想에 重大한 影響을 주고 있으며 여러가지 點에서 서로 다른 會計原則과 節次를 말하고 있다. 最近에는 企業主體論이 이 資本理論보다 會計理論에 더 큰 影響을 주고 있다.

위의 3개의 會計主體理論을 간단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企業主體論(the entity theory) : 企業主體論은 “損益中心”이라고 一般적으로 말한다. 이 理論은 會計의 焦點을 資本主 單位로 본 것이 아니고 企業實體로 보고 있다. 收益과 費用은 所有主의 觀點에서 보다는 企業體를 中心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損益決定에 있어서는 損益計算書를 一次的으로 重要視한다.

또한 이 理論은 法律的인 觀點에서는 獨立된 主體로 보고 있다. 그 主體는 株主, 債權者, 從業員 및 受託者로서의 一般大衆과의 關係에서 存在하고 있다고 보며, 그 主體는 營業成果나 消費된 資本의 生産性에 대해 第一次的으로 責任을 지게된다. 그래서 企業主體論下에서는 損益中心이 된다.

企業主體論과 在庫資產의 評價는 매우 관련이 많다. 損益決定을 하는데 理論적으로 LIFO가 FIFO보다 우월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LIFO는 최근 收益과 최근 費用을 對應시키는데 意義가 있으며 貸借對照表上의 在庫資產의 評價는 별로 重要視하지 않는다.

資本主體論(the proprietary theory) : 資本主體論은 “資產中心”이라고 한다 이 理論은 所有主의 資本을 運營하는 企業의 經濟的 樣相을 強調한다. 따라서 焦點은 어디까지나 所有權에 있다. 그 理由는 株式會社가 發達하기 훨씬 이전에 資本主體論이 會計學의 支配的인 概念이었기 때문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所有主의 資本을 決定하는 것이 會計의 一次的 目的으로 되어 있다.

會計等式은 $資產 - 負債 = 資本$ 으로서 所有主의 資本에 強調點을 두고 있다.

資本主體論이 “資產中心”이라고 하는 理由는 一次的으로 資產評價와 負債의 金額을 決定하고 난 다음에 그 差額을 所有權의 要素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會計의 主 業務는 資產(資產評價)을 報告하는 것이며 財務諸表中 가장 重要的 것은 貸借對照表라고 본다. 收益과 利益은 所有權의 증가로서 定義되고 費用이나 損失은 所有權의 減少로 定義된다.

企業의 主 目的은 資產의 增加를 통해서 所有權을 增加하는 것이며 貸借對照表는 모든 重要的 資產과 所有權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會計測定의

모든 問題는 貸借對照表에 유리하도록 處理되어야 한다. 資本主體論에 의하면 在庫資產 評價에서는 *LIFO*보다 *FIFO*가 論理的으로 우월한 傾向이 있다. 資本主體論이 “資本中心”인 까닭에 貸借對照表를 위한 在庫資產 評價는 利益決定보다 더 重要하다. *FIFO*는 最近의 費用과 收益을 잘 對應시키지 못하지만 資產評價는 더 現實的인 것으로 하는 傾向이 있다.

資金理論(The Funds Theory): 이 理論에 의하면 資產을 資金으로 보며 目的的인 面에서 보면 資產의 運營이 本質的인 것이다. 貸借對照表의 貸邊은 法律的인 것이다. 貸借對照表의 貸邊은 法律的 經濟的 制限性을 뜻하며, 會計의 中心點을 集團的인 資產으로 定義하며, 그와같은 資產의 使用은 制限된다는 概念이다. 資金運營의 主要動機가 된다.

負債는 資產으로부터 支拂되어야 하며 資金에 對한 制限이다. 資金理論에 의하면 資產의 增加는 資金 流通速度가 있으므로 資金使用의 一次的인 樣相은 아니다. 따라서 資金을 使用하는 活動을 利益決定과 관련시킬 必要가 없다.

이와같은 概念에 의하며 利益決定은 財務報告의 二次的 目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資金理論은 產業會計 보다는 信託會社, 政府나 協會같은 곳에 적합한 會計라고 할 수 있다. 減債基金이나 資產의 관한 會計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으로 보아 資金理論이 會計思想에 끼친 影響은 相對的으로 적다.¹⁸⁾

3. 一般會計原則

一般會計原則이란 用語는 會計理論을 論할 때 널리 使用된다. 그리고 그 意味에 關於하여 상당한 差異點을 보이고 있다. 筆者는 狹意의 理論的 意味보다는 廣義의 實用的인 意味로서 用語를 使用하기로 했다. 따라서 一般會計原則은 會計目的에 따라 認定된 廣義의 會計原則을 內包한 것으로 定義된다.

勿論 그 原則은 會計節次라든가 機械的인 計算같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原價主義를 在庫資產에 적용한다면 그 在庫資產은 歷史的 原價에 의해 評價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原價主義라는 一般會計原則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會計節次들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IFO*, *LIFO*, 平均法 其他 다른 會計節次들이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原價主義를 採擇했으나 그 方法 즉 節次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一般會計原則은 物理學이나 化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性質上 不變하는 原則은 아니다. 그것들은 人間의 特殊한 必要性 때문에 人間에 의해 啓發된 것이다. 原則도 그에 따라 變化해야만 한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도 企業會計原則을 改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의 變化에 따라 會計原則이 變해야 한다는 必要性에 의한 것이다. 이들 原則은 固定될 수 없고 變化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會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眞實하고

18) Morton Backer.(ed.), *Modern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Inc., 1966, Chapter xii.

공정한 資料를 利用者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最大限으로 有用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一般會計原則은 權威있는 專門家나 機關의 상당한 支持를 받아야만 한다. 廣義의 一般會計原則에 대해 C.P.A. Handbook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會計原則은 人間에 의해서 採擇되며 人間行爲規則과 같은 性質을 갖고 있으며 時代와 場所에 따라 社會의 特殊한 要求에 맞도록 有用性을 가져야 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會計原則은 發展하고 變化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法律上의 原則들과 類似하다. 예를들면 證據의 原則, 信賴의 原則, 會計責任의 原則 등과 비슷한 것이다. 會計原則은 또한 敎育原理, 예를들면 敎授方法, 學級經營, 敎育監督과도 비슷하며 社會敎養의 原理 즉 인사소개 方法, 食事하는 方法과도 별로 다를 바 없다.”¹⁹⁾

그러면 널리 알려져 있는 7개의 一般會計原則을 선택하여 그 概念을 說明하고자 한다.

1) 原價主義(the cost principle)

原價主義는 會計過程의 基底에 흐르는 보다 基本的인 것이다. 이는 歷史的 原價主義라고도 불리우며 時價主義나 代置原價理論과는 相反되는 概念이다. 原價主義는 取得原價가 會計의 最初認識으로서 가장 적합한 基準이 된다고 보며, 取得原價는 會計過程을 통하여 계속 남아있게 된다.

原價主義는 去來日字의 交換價格으로 主體의 財務效果를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즉 完成된 去來로써 會計의 問題를 認識하려고 한다.

原價主義에 관한 A.A.A.의 定義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一企業의 生産要素와 기타 資源은 取得한 날자에 發生한 費用 投資된 額數 現金 또는 現金等 價格으로서 測定되며 일단 取得한 뒤에는 發生된 費用의 殘額이나 營業效果를 考慮한 投資金額으로 測定된다.

이와 類似하게 債權者나 株主權利는 제공된 金額 혹은 現金 및 現金等價額으로 測定되며 그후의 측정된 營業 分配 其他 會社活動의 累積的인 結果를 反映한다.”²⁰⁾

價原主義를 적용함에 있어서 會計學者들은 원가를 결정할 때 非現金去來의 경우 어려운 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보통은 現金去來價格이 原價決定에 利用되며 非現金去來인 경우에는 그 去來에서 포기된 現金價額의 原價를 측정하거나 資產 또는 用役의 現金等價額이 혼히 쓰인다.

19) Robert L. Kane, Jr., op.cit., Chapt. XVII, p.1.

20) A.A.A.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Review*, June 1943, p.3.

兩者中보다 더 分明한 증거가 있는 것을 評價額으로 使用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土地를 買入하고 그 代金으로 株式을 發行하여 支給한 경우 株式의 公正한 市場價格을 알 수 있으며 그것으로 記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土地의 公正한 市場價格으로 그 原價를 결정해야 한다.

原價主義는 資產 費用등에 있어서와 같이 資本(他人資本과 自己資本)의 測定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強調되어야 한다.

負債는 그 負債의 現金等 價額으로 測定되어야 하고 資本去來는 原價主義에 입각해서 記錄되고 報告되어야 한다.

2) 收益의 原測(the revenue principle)

收益의 原則은 收益을 定義하고 그 測定方法和 收益認識의 時期를 제시한다 이와같이 收益原則의 三面은 各各 概念的으로나 操作的인 點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思想의 明瞭性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定義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基準에서 본다면 收益은 一定한 期間동안 企業에 의한 財貨 및 用役의 創造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 定義는 收益의 測定이나 認識의 時點에 관한 要件 全部를 表示하지는 못하지만 兩者를 절충한 것이라 하겠다.²¹⁾

收益認識의 시점에 관한 實用的 標準이 收益의 副次的인 原則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直接的인 理論的 개념이라기 보다는 操作的인 것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收益의 原則에 의하면 收益은 交換이 이루어 졌을때 認識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收益認識의 第一次的 標準은 販賣時點이 된다.

판매시점은 第一次的으로 商品에 대한 法律的 所有權의 移傳時期로 본다.

예를들면 貨物이 船積地點(*F. O. B. Shipping Point*)로 船積되는 경우에는 商品이 船積會社로 넘어간 때를 法律的 所有權의 移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時點에서 收益이 認識된다. 目的地搬入引渡價格(*F. O. B. destination*)으로 船積된 商品은 終着地까지 운반이 되었을 때에 收益을 認識해야 한다. 商品이 아니고 用役인 경우에는 그 用役이 제공되었을 때를 收益認識의 基準으로 한다. 그러나 實務에서는 用役이 完全히 제공되고 請求書를 받았을 때를 收益이 實現된 것으로 認識하는 경향이 있다. 販賣時點은 다음과 같은 條件下에서만 使用되어야 한다.

① 販賣價格의 궁극적인 實現이 매우 確實한 때.

② 特殊한 去來와 그것과 관련된 費用이나 價原가 販賣時點內에 正確하게 決定될 수 있을 때이다.

21) Eldon S. Hendrickson (Rev.ed),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1970, p.161.

收益을 다음과 같이 다른 觀點에서 定義하기도 한다. “收益은 一定한 期間 內 동안 企業이 고객에게 넘겨주는 製品이나 用役을 貨幣로 表現한 것이다.”²²⁾ 收益의 原則에 依하면 收益은 資本去來로 부터 일어나는 것 이외의 모든 會社 資產의 變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即 收益은 財貨와 用役의 販賣, 利子, 地代, 賃賃, 特許權使用料 및 負債의 有利한 清算으로 부터 얻은 것을 測定한 것이다.

收益의 原則에 關係해서 말하면 收益은 製品이나 用役의 現金交換價値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가장 現想的이라고 한다. 이 概念에 依하면 割引(discount)을 眞實한 現金 交換價値가 되도록 調整한 것으로 본다. 非現金去來에서는 주고 받는 報酬에 대한 公正한 市場價格中 더 명확한 쪽을 택해서 收益의 現金 交換價値로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收益認識의 時期에 關係해서는 一般的으로 實現主義 概念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現金基準도 制限된 범위내에서 收益認識의 時期를 決定하는 基準으로 使用할 수 있다. 現金基準下에서의 收益은 販賣代金を 現金으로 받을 경우에만 認識하려는 것이다. 이 基準은 販賣代表代金の 回收가 상당히 下確實하거나 그 관련된 原價나 費用을 정확히 決定할 수 없을 때에만 使用되어야 한다. 割賦販賣에서는 現金基準에 의하여 收益을 認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基準을 든다면 생산기준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商品이 移轉되는 最終日字가 아니고 製品의 進陟度에 따라 收益을 認識하는 것이다. 이 方法의 變形중 하나가 長期請負契約에서 完成度 比率法(the percentage completion method)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建築請負業者가 3年동안 지을 建物の 一年分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契約條件에 의하여 完成된 비율에 따라 月別로 받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면 모든 收益을 3년후 完成時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收益을 計算하는 會計節次가 使用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生産基準의 다른 例로 固定料金式請負(cost plus fixed fee contract)라는 것도 있다.

네번째로 드물게 使用되는 收益認識의 基準으로 「原價回收」혹은 「埋沒原價基準」(the cost recovery or sunk cost basis)란 것이 있다. 이 基準에 의하면 모든 費用은 收益認識以前에 投資한 金額으로 부터 回收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數年동안 利子支給이 안된 社債를 어떤 投機家가 買入한다고 가정하자. 그때의 買入價格은 最終回收가 매우 不確實하기 때문에 社債滿期價額의 몇분의 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去來는 아주 危險하고 投機的인 것이다. 이런 경우 埋沒原價基準을 使用했다면 利子の 受取는 本來 投資한 金額의 全部가 回收될 때까지는 收益利子로 計上하지 않는다.

收益이 認識되어야 할 時期를 決定하는 問題는 分明히 重要한 것이다. 收益

22) A. A. A.,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Ohio, 1957), p. 5.

과 관련되는 去來가 多樣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唯一한 理論的 法則을 찾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會計學者들은 收益認識의 時點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指針들을 제시하고 發展시켜 가는 것이다.

3) 對應의 原則(the matching principle)

對應의 原則은 一定한 期間동안에 認識되어야 할 收益을 決定하고 그 收益과 관련되어 發生한 費用을 決定해서 當期 純利益을 報告하려는 것이다. 만일 收益이 次期로 移轉되면 그 收益과 相關된 모든 原價나 費用도 같이 移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期間損益을 決定하기 위해서 收益과 費用을 조심스럽게 對應시키는 일은 會計의 重要한 機能이고 볼 수 있겠다.

對應의 原則을 적용하기 위해서 會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豫則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기선공기를 팔았는데 12個月간 品質保證을 한다고 했다면 그 保證費用이 실제로 다음 해에 發生할 것이라는 事實에도 불구하고 이 豫想되는 保證費用을 販賣代金(收益)에 對應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경우 收益과 費用의 對應은 貸損充當金과 같이 未來費用의 推定에 의해서만 可能하다.

4) 客觀性的 原則(the objectivity principle)

客觀性的 原則은 會計資料나 決定은 可能的 限 客觀性 있는 것에 그 基礎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會計담당자는 利害가 相反되는 兩當事者 間に 이루어진 完全한 去來의 結果를 記錄하고 報告해야 한다. 會計資料는 可能하면 主體의 外部로부터 오는 公式的이고 檢證性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意見이나 推測 같은 意思判斷은 최소한도로 그 환경과 一致되도록 결정해야 한다.

會計士나 會計學者들은 會計의 많은 樣相들이 事實과 完全히 一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財務諸表上에 報告된 金額이 事實과 相異하고 價値의 推定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즉 減價償却費, 營業權償却, 收益 및 費用의 移延과 같은 경우에 必要的 推定을 會計節次에 內包하게 된다.

그러나 客觀性的 原則은 專門家로서의 公認會計士가 그 獨立性を 維持하는데 根本的인 하나의 要素가 되기도 한다. 즉 財務諸表에 報告된 金額은 作成者와는 無關한 第三者에 의하여 客觀的인 手段으로 檢證되고 있기 때문이다.

5) 繼續性的 原則(the consistency principle)

繼續性的 原則은 會計主體內에서의 會計理論, 實務 및 方法은 期間이 바뀔에 따라 變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 主體의 會計繼續性이란 次期の 財務資料와 比較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어떤 會計法이 繼續性的 原則을 無視하고 減價償却의 方法을 달리 했다면 比較性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나 留意할 점은 계속성의 原則이 測定이나 報告技術의 向上을 위한 會計

變動을 排除해서는 안된다.

健全한 理由때문에 會計方法의 改善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比較資料를 提示하여 變動된 年度와 次期 年度의 財務諸表에 그와같은 變動된 事實을 公開함으로써 報告되어야 한다. 會合監查報告書에서 繼續性의 原則은 重要性을 갖는다. 1963년에 發刊된 AICPA의 監查報告書節次에 對한 報告書 No. 33에서 監查者에 依한 無限定意規(unqualified opinion)을 表現하는 短文式文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意見으로는 이 報告書에 添附된 財務諸表는 一般의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을 適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前年度와 一致되는 會計處理節次에 依하여 作成된 것으로 ××會社의 197×年 12월 31일 現在의 財正狀態 및 同 期間中의 經營成績을 適正히 表示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²³⁾

(In our opinion, the accompanying balance sheet and statements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 present fairly the financial position of ×× Company at December 31, 197× and the results of its operations for the year then ended,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pplied on a basis consistent with that of the preceding year.)

이와 같은 報告書를 보고 利害關係者들은 財務諸表가 一般會社原則과 節次들이 繼續性의 原則에 따라 前年度와 같은 方法으로 適用되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繼續性의 原則에 依存할 수 있을 때만이 財務報告書는 利害關係者들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다.

監查報告書 No. 33에서는 繼續性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① 財務諸表의 期間比較가 採擇된 會計原則이나 그 適用方法의 變動때문에 重大한 影響을 받고 있지 않다는 確信을 주기 위하여,

② 만일 比較性이 그와같은 重大한 影響을 받는다면 財務諸表에 그 變動의 性質과 效果를 記述할 것을 要求하기 위하여……”

(① To give assurance that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s between periods has not been material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accounting principles employed or in the method of their application; or

② If comparability has been materially affected by such changes, to require a statement of the nature of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financial statements.)²⁴⁾

6) 公開性의 原則(the full-disclosure principle)

公開性의 原則은 企業主體의 經濟的인 事項과 관련이 되는 重要한 모든 情報은 財務諸表上에서 完全하고 理解할 수 있도록 報告되어야 하며 公開의 程度는 利害關係者가 財務諸表를 歪曲하지 않을 程度여야 한다. 完全公開는 報

23) Committee an auditing procedure, AICPA, statements on auditing procedure No. 33 New York, 1963 p. 57

告羈의 追加的인 情報라는 뜻도 包含하고 있다. 卽 建物計定에 對한 評價決定으로서의 減價充當金이라든지 脚註(footnote) 또는 附錄에 依해 追加的인 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 實際로 出版되어 나온 報告書의 모든 脚註들은 바로 이 完全公衆性의 原則에 따라 會計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健全한 判斷에 依한 追加的인 情報를 脚註나 附錄으로 나타낼 責任을 지워주고 있다.

7. 例外的 原則(the exception principle)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會計原則은 本質的인 것이 아니고 人爲的인 것이므로 企業環境의 變化와 財務諸表를 利用하는 사람들의 要求에 따라 變하도록 되어 있다. 會計原則은 實務的인 것이나 多樣한 事實 또는 條件들에 適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약간의 例外는 不可避한 것이다. 이 例外的 原則은 廣義의 會計目的을 達成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例外的 原則中 3개의 特殊概念을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重要性(materiality) : 이 概念에 의하면 重要性이 적은 理論的 취급과 직접 一致시킬 필요가 없다. 會計는 經營의 實務的인 것을 취급하며 그 正確性和 더불어 會計理論에 따른다는 것이 매우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實務的 立場에서 보면 正確性 그 자체에 더 큰 比重을 두어야 하고 原價主義와는 反對되는 理論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重要性의 개념에 의하면 財務報告書의 정확성에 크게 影響을 주지 않는 한 명목적으로 原則에 따라야 할 必要는 없다. C. P. A. Handbook에서는 重要性을 決定하는 方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財務諸表와 관련되는 어떤 項目이 報告書를 判斷하는데 重要한 影響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重要性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項目 그 自體를 가지고서는 重要性을 決定하기 어렵고 다른 項目들이나 주위 환경과 相關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²⁴⁾

예를들면 연필깎는 기계의 耐用年數는 3年이며 取得原價는 700원이라고 한다면 理論的으로는 3년에 걸쳐 그 減價償却費를 計算하여 費用을 配分하여야 하나 그 要求되는 會計處理費用이 資產의 原價보다 더 비싸므로 全體 營業과 相關시켜 볼때 연필깎는 기계의 原價는 분명히 重要性이 적다.

이와같은 會計理論에 대한 例外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와같은 例外를 支配할 수 있는 統一의 政策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政策을 繼續的으로 따르는 會社處理가 바람직한 것이다.

(2) 保守主義(conservatism) : 會計學에 應用된 保守主義의 概念은 兩者擇一의 會計決定을 할 경우 資本主義의 資本에 즉각적으로 가장 不利한 影響을 주도록 選擇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資產評價의 경우 두개의 評價方法이 있다면

24) Ibid., p. 42

25) Robert L. Kane, Jr., op. cit., Chap. xvii, p. 24

더 적에 評價되는 方法을 擇해야 할 것이다. 反對로 負債의 評價에서는 더 높은 金額이 記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原價費用 및 收益의 評價에서는 損益 計算書에 가장 不利하도록 선포하면 된다. 評價에서 그 方法의 選擇이 可能하다면 會計는 合理的인 保守主義에 의하여 有利한 累積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會計學에 있어서 保守主義는 종종 理論的 處理의 例外가 된다. 예를들면 在庫資産의 價時에 使用되고 있는 專價主義는 原價主義의 例外이다. 利益의 豫測을 해서는 안되고 可能的 損失은 적절히 認識해야 한다는 概念을 會計專門家들이 一般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保守主義는 誤謬를 자주 범하고 있다. 지나친 保守主義의 함정을 充分히 認識해야 한다. 會計學에서 지나친 保守主義 때문에 상당한 誤謬가 發生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나친 保守主義의 함정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最近에는 保守主義의 修正이 會計思想이나 實務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3) 産業의 特殊性(industry peculiarities) : 有用性(usefulness), 實行可能性(feasibility), 受當性(appropriateness)이란 會計學的인 觀點에서 보면 産業의 殊性은 會計原則이나 實務의 例外가 된다. 例外의 原則에 의하면 明確한 産業의 慣例이 있는 경우 그 特殊한 項目에 대해서는 특수한 會計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같은 産業의 慣例은 진정으로 必要하고 合理的인 것이어야 하며 實行可能性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會計의 어떤 樣相은 法律的인 條件에 맞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會計의 資本에 대한 商法上의 制限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4. 會計節次(accounting procedures)

會計節次는 根本的으로 理論的인 것이 아니고 會計方法과 관련이 된다. 會計方法은 會計理論이나 原則을 應用해서 나온 것이다. 會計節次는 基本的 假定, 理論的 概念 및 一般會計原則에 따라 會計機能을 遂行하는 方法, 實務 및 接近方法으로 定義될 수 있다. 그러므로 會計節次는 會計理論의 細則과 같은 것이고, 주로 기계적인 일로서 會計主體의 資料 處理 過程과 관련이 된다.

會計理論과 會計實務는 흔히 혼동되기 쉽다. 바로 이 點이 會計節次의 基礎가 되어야 할 統合的인 理論構造의 發達을 阻害하는 一次的 要素가 되고 있다. 會計節次는 企業에 따라 다르며 産業에 따라서도 다르다. 같은 會社에서도 서로 다른 會計節次를 通用함으로써 財務諸表에 報告된 價値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會計專門家들은 (1) 節次가 會計理論이나 原則에 違背되지 않고 選擇한 節次가 通用되고 있는 特殊한 環境에 적합한가 하는데 注意하여야 한다. 固定된 耐用年數를 가진 固定資産의 예로서 機械를 든다면 우선 取得當時는 原價主義에 따라 그 取得原價를 記錄하고 取得後에는 그 原價를 費用收益

의 對應의 原則에 의해 減價償却費를 收 '에서 控除한다. 減價償却의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들면 定率法, 定額法 등이 있으며 이 方法들은 原價主義나 對應의 原則에 立脚한 것이다.

다른 한편 어떤 特殊한 資產은 그 特殊한 環境에 適合한 減價償却의 方法이 오직 하나뿐인 경우도 있다. 減價償却費란 企業에 대한 資產의 總濟的 有用性의 減少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減價償却의 다른 例를 보면 在庫資產의 評價에서 *FIFO*, *LIFO*, 移動平均法 등은 原價主義 및 對應의 原則을 充足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會計節次를 適用함에 있어서 우리는 狀況을 고려한 對應의 原則이나 財務報告書의 廣義의 目的에 가장 잘 適用할 수 있는 것을 擇하는 問題에 當面하게 된다.

會計節次의 例利

(1) 益決定과 관련되는 것들 :

- ㄱ. 減價償却費 推定의 方法(定額法, 定率法, 比率法 등)
- ㄴ. 在庫資產의 評價法(先入先出法, 後入先出法, 單純平均法, 移動平均法 등)
- ㄷ. 小賣在庫調査法
- ㄹ. 間接比率의 適用

(2) 資料의 提示와 관련되는 것들 :

- ㄹ. 非總常의 利益과 損失을 報告하는 方法
- ㅂ. 資料의 憵理와 會計報告書의 書頭
- ㅅ. 會計報告書의 用語選擇

(3) 利益決定이나 資料提示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

- ㅇ. 統制計定의 使用과 그 補助帳簿
- ㅈ. 資料處理法(*manual, machine, computer*)
- ㅊ. 分介帳과 元帳의 整理 및 組織
- ㅋ. 期末整理 및 再修正分介의 準備

위에 열거한 會計節次는 示唆的인 것이다. 이와같은 것들 이외에도 다른 會計節次를 여러가지 方法으로 마련할 수 있다.

V. 結論 및 要約

美國의 財務會計의 理論的 構造를 考察함에 있어서 短片的인 概念들보다는 全體적이고 包括적인 面을 把握하려고 努力을 했다.

財務會計의 理論構造內에 있는 個別的 項目의 內容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概念들이지만 體系的으로 實務的인 것과 連關시켜 廣義의 理論構造를 考察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産業機關이나 政府에 從事하고 있는 會計擔當者들은 會計原則이나 實務에

꼭 맞지 않는 여러가지 問題에 繼續 逢着하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會計擔當者는 實務的인 判斷이나 意思決定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같은 判斷이나 決定은 健全한 理論分析의 基礎를 要求한다.

더구나 會計學徒들에게 基礎的 理論構造가 제시된다면 보다 쉽게 財務會計를 터득하게 할 수 있다는 點에서도 그 重要性은 큰 것이다.

Welsh, Zlatkovich와 White의 基礎理論構造는 비교적 最近의 理論을 많이 包括한 것으로 美國의 많은 大學에서 教材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最近에 美國의 財務會社의 全體的인 理論構造를 考察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財務會計의 理論構造에 대한 全體的 畵像을 다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基礎的 假定

- 1) 個別主體의 假定
- 2) 繼續性의 假定
- 3) 測定單位의 假定
- 4) 時間(期間)에 대한 假定

2. 基礎理論의 概念

- 1) 企業主體論(the entity theory)
- 2) 資本主體論(the proprietary theory)
- 3) 資金理論(the fund theory)

3. 一般會計原則

- 1) 原價主義(the cost principle)
- 2) 收益의 原則(the revenue principle)
- 3) 對應의 原則(the matching principle)
- 4) 客觀性의 原則(the objectivity principle)
- 5) 繼續性의 原則(the consistency principle)
- 6) 公開性의 原則(the full-disclosure principle)
- 7) 例外의 原則(the exception principle)
 - ① 重要性의 原則(materiality)
 - ② 保守主義의 原則(conservatism)
 - ③ 產業特殊性의 原則(industry peculiarities)

4. 會計節次

- 1) 利益決定에 관련된 것들
- 2) 資料提示에 관련된 것들
- 3) 利益決定이나 資料提示에 관련된 것들

맨 끝에 있는 會計節次는 本質的으로 理論이라기 보다는 會計方法 혹은 實務와 관련이 된다. 그러나 會計方法은 會計理論이나 會計原則을 適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廣義의 理論構造에 內包될 수 있는 것이다. 卽 會計節次는

基礎的 假定, 理論的 概念 및 一般會計原則에 따라 會計機能을 遂行하는 方法 혹은 實務로 定義되므로 會計理論의 細則과 같은 것으로 資料處理過程과 關聯된다.

統合的인 財務會計의 理論構造의 發展을 阻害해온 重要한 要因중의 하나가 바로 會計理論과 會計實務를 混同해 왔다는 點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論題 自體가 廣範圍한데 비하여 充分한 研究가 뒤따르지 못한 點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까운 장래를 改正될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의한 財務會計의 理論的 構造에 대한 研究를 期待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 1) A. A. A.,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Review*, June, 1943.
- 2) A. A. A., Committee on Auditing Concepts and Statement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Ohio, 1957.
- 3) A. A. 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 4) A. I. C. P. A.,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 No. 4*, New York, Accounting Research Division A. I. C. P. A., 1971.
- 5) A. I. C. P. A.,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Statements on Auditing Procedure No. 33*, New York, A. I. C. P. A., 1963.
- 6) A. I. C. P. 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A. I. C. P. A., October, 1973.
- 7) A. I. C. P. A.,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Level Changes", *Statement No. 3*, New York, June, 1969.
- 8) Backer, Morton, (ed.), *Modern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Inc., 1966.
- 9) Chambers, Raymond J.,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Prentice-Hall, Inc., 1966.
- 10) Hendrickson, Eldon S., (Rev.ed.)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1970.
- 11) Ijiri, Yuji, *The Foundations of Accounting Measurement: A Mathematical, Economic, and Behavioral Inquiry*, Prentice-Hall, Inc., 1967.
- 12) Kane, Robert L., *C. P. A. Handbook*, New York, A. I. C. P. A., 1953.
- 13) Moonitz, Maurice,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A. I. C. P. A., 1961.
- 14) Sprouse, Robert T. and Moonitz, Maurice,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A. I. C. P. A., 1962.
- 15) Welsch, Zlatkovich, and White, (3rd.ed.) *Intermediate Accounting*, Richard D. Irwin, Inc., 1972.
- 16) 拙稿, "財務諸表의 目的에 대한 考察", 「經營學論集」第1卷 第1號, 中央大學校 中央經營研究所, 1974.

(Summary)

A Study on the Structure of Financial Accounting Theory

Chae Sok Sim

The broad objectives of accounting are threefold: (1) To provide relevant and understandable data concerning the financial affairs of an enterprise to external partie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2) To provide relevant data for decision making by the managers of the enterprise; and (3) To facilitate the broad socio-economic operations of organized society such as taxation,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gulation of commerce, environmental planning and control.

This paper focuses primarily on the first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the underlying structure of financial accounting in the United States.

Since accounting data are of such significance to investors, managements, employees, consumers, creditors, government administrators, and others, it is imperative that the accounting process be based on a sound theoretical foundation. Confidence in, and reliance on, accounting data are directly related to the usefulness, objectivity, feasibility, and accuracy of these data.

To have confidence in financial statements, readers must have an unequivocal basis for assuming that such statements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ocedures consistent with the broad objectives of accounting.

The broad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is outlined below. Each of the four basic categories are defined followed by an exposition of each of the related subconcepts.

1. Fundamental underlying assumptions:

- (1) The separate-entity assumption
- (2) The continuity assumption
- (3) The unit-of-measure assumption
- (4) The time-period assumption

Autho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ongang University

2. Fundamental theoretical concepts:
 - (1) The entity theory
 - (2) The proprietary theory
 - (3) The funds theory
3.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1) The cost principle
 - (2) The revenue principle
 - (3) The matching principle
 - (4) The objectivity principle
 - (5) The consistency principle
 - (6) The full-disclosure principle
 - (7) The exception principle
 - a. Materiality
 - b. Conservatism
 - c. Industry peculiarities
4. Accounting procedures
 - (1) Those related to income determination
 - (2) Those related to presentation of data
 - (3) Those not affecting either income determination or the presentation of data

The fundamental underlying assumptions are broad yet specific aspects of the total environment in which accounting normally operates, and they are of direct significance in relationship to the broad spectrum of the objectives of accounting. The underlying assumptions do not include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but only those significant ones that directly affect and in large part determine the underlying theoretical concepts and foundations of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The fundamental theoretical concepts are broad notions relating to the underlying financial structure of a business enterprise. They are concerned with the theoretical nature of the accounting entities that operate in free economy characterized by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Thus these concepts—the entity theory, the proprietary theory, and the funds theory are concerned with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equities currently organized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manner in which the accounting therefore should be carried out fundamentally.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echniques but with

the basic problem of defining accounting entities, thereby providing a philosophical basis for the general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term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s used widely in discussions of accounting theory and with considerable variation as to meaning. In this paper, the term is used very broadly and in a pragmatic sense rather than in a narrow theoretical sense.

Accordingly,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re defined for our considerations to include those broad rules of accounting action developed and accepted by the accounting profession in conformity with the objectives of accounting, the fundamental underlying assumptions, and the basic theoretical concepts. They do not include the accounting procedures and mechanics.

Accounting procedures are not basically theoretical considerations but rather are related to the "how" of accounting; they result from application of accounting theory and principles. Accounting procedure may be defined as those methods, practices, and approaches generally used to implement the accounting function in conformance with the underlying assumption, theoretical concepts,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hus accounting procedures are concerned with the mechanics of accounting, details of applying accounting theory.

There is a pervasive and unfortunate confusion in much of literature between accounting theory and accounting procedures. This confusion has been one of the primary roadblocks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structure which should underlie accounting procedures.

The APB recently issued their statement No. 4,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lthough the statement does not present an integrated theoretical structure, it does effectively discuss the nature of financial accounting, its objectives, and principles widely used at the present time.

